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1-825)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집 1층 전화 331-0092(공공권리), 전송 252-6976

문서번호 : 20040406

시행일자 : 2004. 04. 06

경 유 :

수 신 : 17대총선 출마 후보자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17대국회의원선거 54대 정책공약 요구에 관한 후보자 기초조사 협조요청의 건

1. 정치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보냅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전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얼마전 『대전지역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정향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바 있으며,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와 유권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특히, 『17대 국회의원선거 54대 정책공약』은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17대 국회가 검토되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입법으로서, 이번 조사결과는 각 후보자들의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바쁘실 줄은 아오나 부디 정치개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신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 및 각 정책내용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이나, 기타 특이공약을 보내주신다면, 과감하게 조사결과 발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7대 국회의원선거 54대 정책공약 요구에 관한 후보자 기초조사』

- 회신마감일 : 2004년 4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 회신방법 : ① 이메일(goldcham@hanmail.net)

② 전송(042-252-6976)

- 결과발표 : 2004년4월 13일(화) 오전 11시 발표

- 문 의 : 담당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42-331-0092, 016-407-817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다음 각 요구공약(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로 표시하십시오.

공 약 내 용	찬성	반대	유보	기타
1.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입법화				
2.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장				
3. 임시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 허용				
4. 실효성 있는 여성 할당제 실시				
5.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6. 노인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주거 등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7.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8.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9. 식품안전망 확보를 위한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와 수입 검역 확충				
10.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11. 중앙정부정책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등 지역대표성 확보				
1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				
1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1조원 규모로 확충				
14.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				
15.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16.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18.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				
19. 전시 작전권 환수				
20.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21.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22. 행정민주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개정, 회의록공개법 제정				
23. 행정개혁기본법 제정				
24. 납세자 소송, 국민소환제 도입				
25.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공 약 내 용	찬성	반대	유보	기타
26.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				
27.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28.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29.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30.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31.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32.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33.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34.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 수급자수를 전국민5% 수준으로 확대				
35.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36.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				
37.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38.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39. 공공의료 강화				
40.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41. 약가의 대폭인하 및 약품유통과정 공영화				
42.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				
43.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44.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및 실행				
4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 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46. 영유아로부터 18세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 실시				
47. 최신 학교 시설 환경 구축과 국가 교육재정 GNP 7% 확보				
48. 학생의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면적 무료 학교 급식 실시				
49.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50.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 제정 및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5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폐와 시민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5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3. 도박산업종합정비법 제정				
54.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				

지 역 구 :

소속정당 :

출마자명 :

인

※ 참고자료 / 17대국회의원 선거 54대 요구공약 세부내용

1.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입법화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도적범죄등 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입법

2.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장

수용자의 집필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서신검열을 폐지하여 그 발송의 자유를 보장하며, 행형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진료 허용하며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등 수용자들의 의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형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3.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 허용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에 대한 평등대우를 법적으로 세밀화 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명목적 비정규직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 추진

4. 실효성 있는 여성 할당제 실시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비율을 1 : 1로 조정하며, 모든 선거시 지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 이상 여성할당, 또한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을 할당.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2개 동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 채택

5.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도입,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하고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격려와 출산비용 지원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 수당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을 높임.

6. 노인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주거 등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요양시설 확대와 간병비용 사회화를 통해 장기와병노인에 대한 가족간호부담을 줄이고, 노인단독가구 공동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여 노인주거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노령수당을 현실화하고 그 적용대상 개시연령을 단축. 또한 여성장애인에 게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및 학습도우미 파견을 제도화하며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공교육 및 사회교육, 직업훈련 체계화 및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 추진

7.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1)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2) 지역혁신역량증진법 제정, 3)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제 시행제 도입 시행 추진

8.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국가정책과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며 정부부처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환경경영체제 도입 추진

9. 식품안전망 확보를 위한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와 수입 검역 확충

유전자 조작식품 GMO 표시제도를 강화, 확대하여 GMO 안전성 심사지침 강화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역 시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한편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시급히 확대하고 국내 고유종자 등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10.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핵발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장기 전력정책을 채택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며, 핵발전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전력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실용화에 투입하여 전력원을 대체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추진

11. 중앙정부정책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등 지역대표성 확보

지방과 관련한 입법안, 국토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련전문가의 상당비율의 참여를 가능하게 도록 함.

1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공유를 통한 지방세원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지역간 재정력불균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재원의 성격 을 갖는 양여금과 보조금은 가능한 한 폐지 축소하고 일반보조금으로서의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함.

1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1조원 규모로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현재 연간 5조원 규모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재원의 규모를 11조원 이상의 규모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

14.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

남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원료 지원, 임진강수해 방지 사업, 쌀 및 농산물과 비료 및 농기자재 지원 등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함.

15.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해결한다.

16.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남북의 합의아래 새롭게 설정하여 군사적 충돌의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문제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보상, 남북 상호 간 갈등의 요인을 제거토록 추진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간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며,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재판관할과 관련한 한미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 함.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본문내 환경조항 신설하여: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행위를 한국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 강제, 환경오염의심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권 보장, 반환예정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를 추진.

18.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등 반핵 협정의 준수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되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해결 원칙이 확고히 유지하며,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인 환경 조성을 추진.

19. 전시 작전권 환수

중속적인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동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인 미군에게 위임된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를 추진

20.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정당법에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해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강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아닌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르도록 함. 아울러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도록 관련법 개정

21.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를 통한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선관위로 이관하고,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며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22. 행정민주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개정, 회의록공개법 제정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정책실패의 엄청난 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공법상 계약의 체결·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며, 행정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보유정보를 목록화하고 검색시스템을 갖추며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을 확립하며, 회의록공개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추진

23. 행정개혁기본법 제정

상시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개혁에서 탈피, 정부개혁의 과제와 추진체계를 법정화를 추진.

24. 납세자 소송,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를 입법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을 법제화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충 함.

25.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순환출자의 폐해를 시정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재개정하여 원래대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더욱 낮추도록 하며 예외조항을 축소를 추진

26.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며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 및 계열사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견권을 일정 한도 이내로(3%) 제한토록 관련법 개정

27.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하한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는 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는 50%로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한 것은 재벌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를 독단 경영하는 폐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자회사 보유 지분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토록 관련법 개정

28.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증빙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거래가 증빙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29.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현재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합의차명' 형식으로 차명거래가 가능한 여지를 두고 있어 부정부패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금지와 처벌이라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30.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전문직종의 경우 신용카드 자체의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수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소득과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의 추진.

31.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의 대상축소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정책으로, '역진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감세정책에 의한 경기부양효과 자체가 의심스러움으로 추가적인 감세를 반대.

32.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부회계의 기업회계(복식부기) 도입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해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회계제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국회 법제예산실의 기능 강화를 통해 국회의 예산결산권을 강화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개혁.

33.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34.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 수급자수를 전국민5% 수준으로 확대

현재 151만명(전국민의 3.2%)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있으나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다수 존재함으로 ①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 계층방식 도입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탄력적 운용 ③ 직계혈족 중 손자녀·조부모간, 형제간, 시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기준부과하지 않음. ④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앓는 경우,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부양비 징구를 면제 ⑤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상향 조정 ⑤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폭을 넓힘의 방법을 통해 수급자 수를 전국민의 5% 수준으로 확대

35.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현행 일정한 선 이하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수급자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오히려 차상위빈곤계층과 실질 소득에 있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급자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차상위빈곤층에게 최소한의 필요적 급여인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에 따른 부분급여 실시

36.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따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음으로써 일관된 기준이 없고, 중복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함으로 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을 현재의 공단의 업무에서 국세청업무로 이관시킴.

37.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우리의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상인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소외계층의 대부분을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4대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 기간을 현행 3개월 근로에서 1개월 근로로 모두 통일하여 임금근로자는 무조건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고, 4대 사회보험 한곳에만 가입되면 다른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체계를 통일함. 아울러 임시, 일고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준 빈곤층에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보험료 납부 자격을 주는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시킴.

38.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전인구의 7.9%)이나 이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약 60만명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공공부조적 성격의 경로연금을 5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적어도 200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9.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관의 90%가 영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인 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시나 군, 구별로 1개 이상의 공립병원을 설립 또는 강화하고 도시지역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갖춘 도시형 보건지소를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만들도록 추진(공립병원 200개 설립, 도시보건지소 1000개 설립).

40.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부담은 부담대로 하면서 환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이용자 보호원(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자권리신장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추진

41. 약가의 대폭인하 및 약품유통과정 공영화

우리나라 약가는 제약회사와 의료공급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약값이 결정되고 소비자는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여 현재의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당국이 제약회사의 입찰을 받는 의약품 입찰제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약가거품을 제거하며 약품유통공사를 설립 유통과정을 공영화를 추진

42.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

현재 무료보조구 지원정책은 형식에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별,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책의 마련

43.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관련 개별법률들에는 차별금지조항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만 명기되어 있을 뿐 장애인당사자의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되어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44.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및 실행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1990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해외 체류 한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협약을 비준하여 인권보호의 국제적, 보편적 기준을 채택, 실행함.

4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 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한시적으로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력난 삭제 및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공직 채용시 각 지역의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해 인재 지역할당제를 도입함.

46. 영유아로부터 18세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 실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무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녀의 교육에 사교육비가 많은 액수 지출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의 경우는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의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18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를 추진함.

47. 최신 학교 시설 환경 구축과 국가 교육재정 GNP 7% 확보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한 학급 학생수가 45명(초등학교)이 되는 학교들도 있으며, 실험실, 도서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학교들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현상은 초중고, 대학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의 학교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각급학교의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교육재정 GNP 7% 확보를 추진함.

48. 학생의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면적 무료 학교 급식 실시

학교내 한 주체이면서도 객체로써만 인정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는 현재 열악한 상황이며, 학교내 급식 재원 중 학부모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이나 되고 있고, 학교 급식시설 등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영양공급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으로 학교내 폭력과 각종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인권·복지신장 특별법 제정과 무료 급식, 학교급식시설의 직영화,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 함.

49.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혁 및 특성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문화영역(시청각아카이브, 공공미디어 센터, 독립문화진흥센터, 시민문화창작센터 등)의 창출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을 바탕으로 지역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 함.

50.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 제정 및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증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실질적 보장 추진.

5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폐와 시민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키 위해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폐지하거나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등에 관한 규제를 없애도록 개정하며 비영리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계산시에 손비(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5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한국전쟁전후에 양민의 학살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바 이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53. 도박산업종합정비법 제정

각종 공적기금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도박산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이 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박산업의 신규 인허가를 중단하고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도박산업을 정비하는 도박산업종합정비법을 제정함.

54.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

기존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이 가져온 문제점중의 하나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도시교통문제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중교통육성법을 좀더 강화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 및 보행권강화 등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교통정책의 근간으로 삼도록 함.